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2호 2011년 6월 pp.435~454
한국세무학회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심충진** · 이준규***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던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노동수요와 연결하여 검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건비로 조정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과 노동수요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은 노동수요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통제변수 중 매출액과 설비투자자산도 노동수요와 양(+)의 관련성이 있었으나 부채비율은 노동수요와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서비스업종과 비서비스업종 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효과는 차이가 있었다. 비서비스업종에 비해 서비스업종에서 인건비로 조정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은 노동수요와 더 많은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셋째, 추가검증 결과,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었던 기간(2004년도~2005년도)과 동 제도의 적용기간이 끝난 다음연도(2006년도)의 노동수요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동 제도가 끝난 다음연도의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노동수요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조세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그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제어> 고용증대, 노동수요, 조세정책

* 본 논문은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2010.12.)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좋은 논문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chjshim@konkuk.ac.kr, 02-2049-6049, 주저자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경영대학 교수, juneqlee@khu.ac.kr, 02-961-9178, 교신저자

I. 서 론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었고 최근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사태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여 고용이 촉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수시장 보다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불경기일 경우 우리의 노동시장은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와 관련된 조세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노동공급을 촉진하여 노동공급 곡선을 우측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조세정책을 사용하거나 노동수요를 촉진시켜 노동수요 곡선을 우측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조세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동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환급형 조세지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노동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일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등의 조세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의 부담을 정부가 세액공제 등 재정지출의 형태로 부담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실업이 증가하고 불경기일 때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환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 불경기일 때 노동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고용증대와 관련된 세액공제혜택을 받고자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것인지는 의문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의 크기가 클 경우 기업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임금의 감소효과가 크기 때문에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이 수혜받는 고용증대의 세액공제액이 낮을 경우 고용증대의 세액공제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으며, 낮은 세액공제액은 노동수요의 증가를 유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

비록, 정부가 고용촉진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것이다. 고용촉진의 효과는 노동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쉬운 서비스업종과 신규고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비투자 등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비서비스업종 간에 차이가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의 노동수요와 동 제도의 적용기간이 끝난 후 노동수요의 차이를 통해서도 검증이 가능하다. 만약, 동 제도의 적용기간이 끝난 후 노동수요가 감소한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첫째, 고용증대 세액공제액과 노동수요 간에 양(+)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 기간 동안 서비스업종과 비서비스업종 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가 다른지

를 검증한다. 추가적인 검증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 기간 동안의 노동수요와 동제도의 도입이 끝난 다음연도의 노동수요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다.

본 연구는 I장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고용증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술하며, III장에서는 검증기간을 중심으로 고용관련 조세지원 제도를 기술한다. IV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가설의 설정, 연구의 모형 등 연구 설계를 한다. 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기술하고 VI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기술한다.

II. 선행연구

고용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근로의욕 고취와 관련된 연구

이태정(2010)은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미국의 EITC(근로장려세제), 영국의 CTC(아동세액공제)와 WTC(근로세액공제) 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에 연동하는 방안, 부양가족에 대한 상황 반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기현(2009)은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009년도 중 63만 가구에 4,7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 지원에 적합한 사회안전망의 도입, 저소득 근로자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 근로유인의 제고,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김선빈·장용성(2008)은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보조금 정책의 경우에는 노동소득세율과 노동공급의 인센티브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있고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공급의 감소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장려금제도가 유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철인(2006)은 조세제도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국내외 연구를 서베이한 후, 세부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업보험금이 일정 실질수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임금은 별로 상승하지 않되 고용은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협상에 의해 임금 및 고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세제가 역진적일수록 향후 세제를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개편할 경우 동일한 세수를 확보하더라도 고용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러한 연구를 통해서 경제활동참가의 한계선에 있는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임금, 기술진보 및 경기상황 등과 고용에 대한 연구

전병유 등(2005)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노동수요 구조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임금이 10% 상승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1.26~2.53%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요충격에 대해 임금조정 보다는 고용조정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술진보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품의 소득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고용효과가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부채비율이 투자나 고용확대와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것이라는 가설도 잘 맞지 않았다.

송일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설비투자에 대한 고용촉진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설비투자 시점에서는 고용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설비투자 이후 1년 및 2년차에서는 양(+)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였다. 설비능력의 증가와 5년간의 누적 고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발투자와는 달리 전 부문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설비능력증가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R&D지표나 특허건수에 의한 노동효과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3. 조세체계(직접세, 간접세)의 구조와 고용에 관한 연구

어떠한 조세체계 하에서 고용이 증대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손광락·손수석·안병철(2006)은 Harden and Hoyt(2003)의 연구방법을 원용하여 고용 방정식과 조세수입 방정식을 추정하고 그 후 균형예산의 제약조건 하에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고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세구조(2004년 직접세 : 간접세 = 53.6% : 46.4%)가 대체적으로 고용증대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득배분배를 강조하여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고용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균형예산 제약 하에서 고용증대가 중요한 정책목표인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에 소비세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에서 세제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법인세와 고용에 관한 연구

김현숙(2004)은 기업의 미시 재무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

별·업종별 조세부담의 차이와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법인세의 증가율이 종업원 수의 증가율과 음(-)의 값은 나타나고 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노동수요 측면에서 세제를 통한 고용창출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관심사인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Harden and Hoyt(2003)의 연구에 의하면 고용정책을 사용할 경우 세금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즉, 조세정책을 선택할 경우 고용과 정부의 세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인세는 통계학적으로 고용의 촉진과 음(-)의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20년간의 장기간 분석을 통해서 법인세에서 판매세나 개인소득세로 10% 이동할 경우 고용은 1.7%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본 연구의 차별성

조세와 고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세의 부담과 고용에 관한 연구, 직접세나 간접세 중 어떤 조세체계가 고용에 더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나쁜 상황 하에서 정부가 2004년 7월에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기업들의 재무적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노동수요와 연결하여 개별 기업의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정책효과를 검증할 수 있으며, 향후 고용촉진과 관련된 조세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I. 고용 관련 조세제도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로 대표되는 것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고용유지 세액공제제도,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등이 있다. 특히,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고용촉진과 가장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증대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효과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¹⁾ 특히,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검증대상 기간(2004년도~2006년도)에 적용되었던 고용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는 2004년도(2004.7.26.신설)와 2005년도, 2010년도 시행되었다. 2010년도 시행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고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KIS-VALUE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2009년도까지의 상장기업과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시되고 있지만, 2010년도 종업원에 대한 정보는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²⁾는 실효성과 세수 부족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결국 시행1년 5개월 만에(2004.7.26~2005.12) 폐지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1,100억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되었지만 결국 고용을 늘리는 데는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늘어난 취업자 수만을 따져보면 28만 1천여 명으로 정부가 목표로 했던 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의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³⁾

가. 대상 업종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나. 공제금액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제요건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 중단 또는 복귀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와 노동수요의 관련성

불경기일 때 경영자는 가급적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다. 이 때 정부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로 고용을 할 경우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에 대한 노동수요의 탄력도는 음(-)의 값을 가지므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질 경우 이론적으로 노동수요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비록, 정부가 고용촉진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를 증가시키더라도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신규 고용을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도 고용촉진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조특법 제30조의 4

3) 재정포럼 2010.4, 한국조세연구원 pp.28-29.

2. 기타 고용관련 조세특례 규정

고용증대 이외 고용과 관련된 조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내국인에 대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창업하는 내국인은 중소기업으로서 특정한 업종⁴⁾에만 해당된다. 현실적으로 대규모 창업자 보다는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상장기업과 비상장 외부감사대상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동 제도의 효과까지는 검증하지 않는다.

나.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다음과 같이 두 번에 걸쳐 있었다.

〈표 1〉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

	최초시행기간	두 번째 시행(2009. 5.21 신설)
시행 시기	2004. 7. 26~2006.12.30	2009. 5.21~2010.12.31
적용대상 기업	제조업, 광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를 새로이 시행하여 상시근로자가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매출액<직전 과세연도 매출액×90% ② 상시근로자수>직전근로자수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직전 과세연도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4)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표 1〉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 (계속)

	최초시행기간	두 번째 시행(2009. 5.21 신설)
혜택	세액공제 = 고용유지 인원수 ⁵⁾ × 50만원	소득공제 ^{주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100분의 50

주1)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주2) 자료 : 세법전 참조

다. 최근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개정

2010년 3월 12일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개정이 있었다.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상시근로자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아직 시행이 완료되지 않아 자료수집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조세특례 효과는 검증하지 않는다.

라. 근로장려세제(EITC)

노동공급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는 대표적으로 근로장려세제(EITC)가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다.⁶⁾ 동 제도는 2006년 12월 31일 신설되었으며 시행일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미국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 기간(2004년~2005년)에 미국은 별도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으나 2010년 3월 18일 입법된 고용촉진(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 HIRE)법안에 의하면 실업자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사회보장세 부담금 면제와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

5)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년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년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시행일 전 1년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직전 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6)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 2를 참조한다.

공한다.⁷⁾ 즉, 사업자가 부담하는 6.2%의 사회보장세 부담금을 면제하며, 52주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추가로 근로자 1인당 \$1,0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복지와 연결된 고용세액공제제도(welfare-to-work tax credit)를 시행한 적이 있었다.

IV. 연구의 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04년도 3.7%, 2005년도 3.7%, 2006년도 3.5%이며, 미국의 실업률은 2004년도 5.5%, 2005년도 5.1%, 2006년도 4.6%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보면 2004년도 4.6%, 2005년도 4.0%, 2006년도 5.2%이며, 미국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04년도 3.6%, 2005년도 3.1%, 2006년도 2.7%로 낮아지고 있다.⁸⁾ 이러한 미국의 경제상황의 악화는 국내 경제 및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년실업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 7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증대 축진을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김현숙(2004)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노동수요 측면에서 세제를 통한 고용창출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병유 등(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이 10% 상승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1.26~2.5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을 실질적으로 하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Harden and Hoyt(2003)의 연구에 의하면 고용정책을 사용할 경우 세금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장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1)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은 노동수요와 양(+)의 관련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경기일 때 정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등 조세정책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려고 한다. Cobb-Douglas 생산함수에 의하면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함수이다. 불경기일 때 경영자는 자본의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호황기보다 높기 때문에 가급적 자본에 투자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종에서는 노동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비서비스업종의 경영자보다 빠르게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결국,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는 업종에 따라 다를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2)를 설정하여 서비스업

7) 추가적인 내용은 www.irs.gov/newsroom/article을 참조 함

8) OECD. Stat Extract 자료 참조

종과 비서비스업종 간 고용증대 세액공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2)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는 비서비스업종과 서비스업종 간에 차이가 있다.

2. 연구모형

가.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노동수요의 관련성 연구모형

<연구모형 1>은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노동수요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고용증대 세액공제액과 노동수요 간에 양(+)의 관련성이 있다면 β_1 의 계수 값은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는 매출액(Sales), 설비투자(PPE), 부채비율(LEV),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OCF)을 사용한다.

매출액(Sales)이 증가할 경우 총생산물이 증가되기 때문에 노동수요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수요의 증가가 매출액과 선형적으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매출액에 Log를 취하였다. 설비투자(PPE)의 지출은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기술혁신에 의해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부채비율(LEV)이 높을 경우 미래 상환해야 될 부채가 많기 때문에 노동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OCF)은 노동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 현금흐름이 투자자금 및 차입의 상황에 사용된다면 노동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연구모형 1>

$$L_{i,t}^d = \beta_0 + \beta_1 TaxCredit_{i,t} + \beta_2 Sales_{i,t} + \beta_3 PPE_{i,t} + \beta_4 LEV_{i,t} + \beta_5 OCF_{i,t} + \epsilon_{i,t}$$

여기서,

$L_{i,t}^d$: 기업 i의 t 시점 상시근로자 종업원 수⁹⁾

$TaxCredit_{i,t}$: 기업 i의 t 시점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을 인건비로 나눈 값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 전년대비 증가된 종업원 수 × 100만원)

$Sales_{i,t}$: 기업 i의 t 시점 매출액의 로그 값

$PPE_{i,t}$: 기업 i의 t 시점 설비투자금액/기초자산총계

다만, 설비투자금액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설비투자 + 선박 · 항공기

$LEV_{i,t}$: 기업 i의 t 시점 부채비율(부채총계/기초자본총계)

$OCF_{i,t}$: 기업 i의 t 시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당기매출액

9) KIS-VALUE에서 공시하고 있는 종업원 수는 상시근로자 종업원 수를 의미한다.

나. 업종 간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의 차이에 대한 검증모형

<연구모형 2>는 (연구가설 2)와 관련이 있다. 불경기일 때는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설비투자의 비중이 낮고 고용의 진입과 탈퇴가 상대적으로 쉬운 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비서비스업종 보다 노동수요의 반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서비스업종이 비서비스업종 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에 따른 노동수요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한다면 γ_2 의 계수 값은 양(+)의 유의성이 있어야 한다.

<연구모형 2>

$$L_{i,t}^d = \gamma_0 + \gamma_1 TaxCredit_{i,t} + \gamma_2 TaxCredit_{i,t} * IND + \gamma_3 Sales_{i,t} + \gamma_4 PPE_{i,t} + \gamma_5 LEV_{i,t} + \gamma_6 OCF_{i,t} + \epsilon_{i,t}$$

여기서,

$L_{i,t}^d$: 기업 i의 t 시점 상시근로자 종업원 수

$TaxCredit_{i,t}$: 기업 i의 t 시점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을 인건비로 나눈 값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 전년대비 증가된 종업원 수 × 100만원)

IND : KIS-VALUE상 서비스업종은 1, 비서비스업종은 0인 더미변수

$Sales_{i,t}$: 기업 i의 t 시점 매출액의 로그 값

$PPE_{i,t}$: 기업 i의 t 시점 설비투자금액/기초자산총계

다만, 설비투자금액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설비투자 + 선박 · 항공기

$LEV_{i,t}$: 기업 i의 t 시점 부채비율(부채총계/기초자본총계)

$OCF_{i,t}$: 기업 i의 t 시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당기매출액

다. 추가 검증모형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가 있었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된 기간에 비해 동 제도의 적용기간이 끝난 후 노동수요가 유의적으로 증가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추가 연구모형>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된 기간에 비해 동 제도의 적용기간이 종료된 다음연도에 노동수요가 유의적으로 증가되지 않는다면, δ_1 의 계수 값은 양(+)의 유의성이 없어야 한다. 노동수요는 내부적인 재무정보 이외 경제성장 등 외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외부환경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 증가율(GDP)을 통제변수에 추가한다.

<추가 연구모형>

$$L_{i,t}^d = \delta_0 + \delta_1 YearDummy + \delta_2 Sales_{i,t} + \delta_3 PPE_{i,t} + \delta_4 LEV_{i,t} + \delta_5 OCF_{i,t} + \delta_6 GDP_t + \epsilon_{i,t}$$

여기서,

$YearDummy$: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기이면 0,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이후 기간이면 1인 연도 더미변수(즉, 2004년도와 2005년도면 0, 2006년도이면 1)

GDP_t : OECD에서 공시하는 t시점 한국의 국내총생산 증가율(2004년도 4.6%, 2005년도 4.0%, 2006년도 5.2%)

그 외 변수설명은 위 <연구모형1,2>의 변수 설명을 참조한다.

3. 표본기업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의 검증을 위한 표본기업은 KIS-VALUE에서 추출 가능한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결산월이 12월인 중소기업

둘째, 검증기간(2004년 ~ 2006년) 동안 재무적 자료가 있는 기업

셋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

넷째, 비상장기업으로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

표본기업은 상장유가증권 시장에 등록된 기업 205개,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기업 678개, 비상장법인으로서 외부감사대상 기업 5,645개이다. 3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전체 표본은 19,584기업-년이다.

<표 2> 표본기업의 수

	유가증권 시장에 등록된 기업 수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기업 수	비상장외부감사 대상 기업 수	합 계
2004년도	205	678	5,645	6,528
2005년도	205	678	5,645	6,528
2006년도	205	678	5,645	6,528
중소기업 전체 : 기업-년	615	2,034	16,935	19,584

표본기업의 산업구분은 <표 3>과 같다. KIS-VALUE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의 대분류 기준을 채택하였으며, 대분류 기준에 의하여 연구자가 비서비스업종과 서비스업종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¹⁰⁾

10) 업종의 구분을 비서비스업종과 서비스업종으로 구분한 것은 KIS-VALUE의 산업 대분류에서 서비스업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서비스업종의 설비투자 등 자본적 지출이 비서비스업종 보다 낮으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3〉 서비스업종과 비서비스업종의 산업구분

구 분	업종 구분(기업-년) : 2004년도~2005년도
A00000/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비서비스업종 (11,688)
B00000/광업 (05 ~ 08)	
C00000/제조업 (10 ~ 33)	
D00000/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 36)	
E00000/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 39)	
F00000/건설업 (41 ~ 42)	
G00000/도매 및 소매업(45~47)	
H00000/운수업(49~52)	
I00000/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J00000/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K00000/금융 및 보험업 (64 ~ 66)	
L00000/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M00000/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 73)	서비스업종 (1,368)
N00000/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P00000/교육 서비스업(85)	
Q00000/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R00000/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S00000/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주) 위 업종은 모두 고용증대 세액공제대상 업종에 해당된다.

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다. Panel A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 2004년도와 2005년도의 기술통계량이며, Panel B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 이후 연도의 기술통계량이다. Panel A를 보면, 종업원 수(L^d)는 평균 94.38명이며, 표준편차는 76.19명으로 기업 간 종업원 수에 차이가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인건비로 나눈 값(TaxCredit)의 평균은 0.0021이며, 표준편차가 0.0036이므로 기업 간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고용

증대 세액공제 규모는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의 로그 값(Sales) 평균은 23.78이며 표준편차가 낮아 기업 간 매출액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매출액을 로그 값으로 측정함으로써 기업 간 편차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건물 등 설비자산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PPE 변수의 평균은 0.196이며, 표준편차가 0.180이므로 기업 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부채비율(LEV)은 2.40이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OCF)의 평균은 0.062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끝난 후 회계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술통계량은 Panel B에서 보듯이, 종업원 수의 평균은 96.04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매출액 및 설비 투자 등은 고용증대 세액공제기간 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OCF)은 Panel A의 기술통계량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즉,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의 매출액 증가, 부채비율 감소, 설비투자의 증가 등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노동수요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다.

〈표 4〉 기술통계량

Panel A : 2004— 2005년도					
	25%	평 균	표준편차	75%	기업-년, 기업
L^d	37.00	94.38	76.19	130.00	13,056 (기업-년)
$TaxCredit$	0.0000	0.0021	0.00365	0.0028	
$Sales$	23.17	23.78	1.01	24.49	
PPE	0.039	0.196	0.180	0.305	
LEV	0.555	2.40	3.432	3.323	
OCF	-0.003	0.062	0.146	0.128	
Panel B : 2006년도					
	25%	평 균	표준편차	75%	기업-년, 기업
L^d	37.00	96.04	76.55	134.00	6,528
$Sales$	23.22	23.84	1.03	24.58	
PPE	0.043	0.187	0.17	0.285	
LEV	0.51	2.22	3.18	3.05	
OCF	-0.01	0.053	0.15	0.126	

주) L^d : 상시근로자 종업원 수, *TaxCredit* :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인건비, *Sales* : 매출액의 로그 값, *PPE* : 설비투자금액/기초자산총계, *LEV* : 부채비율(부채총계/기초자본총계), *OCF*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당기매출액, 모든 변수는 상하 5%에서 winsorizing 한 후의 값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이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노동수요 간의 관련성에 관한 검증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도입되었다. <모형 1>은 인건비로 조정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노동수요와 양(+)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즉, *TaxCredit*의 계수 값(t 값)은 1462.40(9.63)이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 이는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많을수록 노동수요의 증가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노동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매출액(*Sales*) 및 설비 등 투자(*PPE*) 변수가 있다.¹¹⁾ 그러나 부채비율(*LEV*)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매출액으로 나눈 변수(*OCF*)의 계수 값은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¹²⁾

<표 5>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노동수요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검증결과

$$L_{i,t}^d = \beta_0 + \beta_1 TaxCredit_{i,t} + \beta_2 Sales_{i,t} + \beta_3 PPE_{i,t} + \beta_4 LEV_{i,t} + \beta_5 OCF_{i,t} + \epsilon_{i,t}$$

$$L_{i,t}^d = \gamma_0 + \gamma_1 TaxCredit_{i,t} + \gamma_2 TaxCredit_{i,t} * IND + \gamma_3 Sales_{i,t} + \gamma_4 PPE_{i,t} + \gamma_5 LEV_{i,t} + \gamma_6 OCF_{i,t} + \epsilon_{i,t}$$

	<모형 1>	<모형 2>
<i>intercept</i>	-931.23 (-70.30)***	-940.34 (-70.69)***
<i>TaxCredit</i>	1462.40 (9.63)***	1145.45 (7.18)***
<i>TaxCredit*IND</i>	—	2555.04 (6.42)***
<i>Sales</i>	42.531 (77.22)***	42.90 (77.58)***
<i>PPE</i>	88.28 (27.96)***	89.51 (28.34)***
<i>LEV</i>	-2.51 (-15.63)***	-2.48 (-15.42)***
<i>OCF</i>	-7.83 (-2.07)**	-9.096 (-2.41)**
ad_R ²	0.3282	0.3302
기업-년	13,056	13,056

주1) L^d : 상시근로자 종업원 수, *TaxCredit* :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인건비, *IND* : KIS-VALUE상 소비성 서비스업은 1, 그 외 비소비성 서비스업은 0인 더미변수, *Sales* : 매출액의 로그 값, *PPE* : 설비투자금액/기초자산총계, *LEV* : 부채비율(부채총계/기초자본총계), *OCF*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당기 매출액

주2) **, *** :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음

- 11)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생산량이 증가하므로 노동의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설비투자의 증가는 노동의 증가와 관련성이 높다. 물론, 일부 하이테크 기술은 노동수요의 감소와 관련성은 있을 것이다.
- 12)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채무의 상환부담이 높기 때문에 노동수요의 감소와 관련성이 있고, 매출액으로 나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예상과 달리 노동수요에 음(-)의 관련성이 나타난 것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부채상환 등에 사용된다면 발생될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모형 2>는 경기가 불경기 일 때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설비투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종이 비서비스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가 큰지를 검증한 결과이다. 즉, $TaxCredit*IND$ 변수의 계수 값(t 값)은 2555.04(6.42)이므로 비서비스업종에 비해 서비스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효과가 발생하였다. 통제변수의 결과는 <모형 1>과 같다. 따라서 <모형 1>과 <모형 2>의 결과를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는 긍정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상장된 기업과 비상장된 외부감사대상 기업 간의 특성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경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형 2>에 대한 검증결과를 상장된 기업과 비상장된 외부감사대상 기업으로 구분하여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인건비로 조정된 고용증대 세액공제 변수($TaxCredit$)의 계수 값(t 값)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할 경우 844.39(1.96)이며,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할 경우 1108.76(6.54)으로 시장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와 연구결과는 같다. 또한, 서비스업종과 비서비스업종의 산업더미변수를 이용한 분석결과 상장기업의 경우는 3841.36(4.78),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1959.62(4.32)로 모두 시장을 구분하지 않은 검증결과와 같다.

<표 6> 시장구분에 의한 검증결과

$$L_{i,t}^d = \gamma_0 + \gamma_1 TaxCredit_{i,t} + \gamma_2 TaxCredit_{i,t} * IND + \gamma_3 Sales_{i,t} + \gamma_4 PPE_{i,t} + \gamma_5 LEV_{i,t} + \gamma_6 OCF_{i,t} + \epsilon_{i,t}$$

	상장기업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기업
<i>intercept</i>	-1268.84(-32.60)***	-850.31(-59.71)***
<i>TaxCredit</i>	844.39(1.96)*	1108.76(6.54)***
<i>TaxCredit*IND</i>	3841.36(4.78)***	1959.62(4.32)***
<i>Sales</i>	57.20(35.73)***	38.96(65.62)***
<i>PPE</i>	118.88(11.16)***	84.07(25.69)***
<i>LEV</i>	-2.44(-2.65)**	-2.05(-12.60)***
<i>OCF</i>	-26.46(-2.35)**	-7.38(-1.86)*
ad_R ²	0.4512	0.2892
기업-년	1,766	11,290

주1) L^d : 상시근로자 종업원 수, $TaxCredit$: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인건비, IND : KIS-VALUE상 소비성 서비스업은 1, 그 외 비소비성 서비스업은 0인 더미변수, $Sales$: 매출액의 로그 값, PPE : 설비투자금액/기초자산총계, LEV : 부채비율(부채총계/기초자산총계), OCF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당기 매출액

주2) *, **, *** :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음

3. 추가검증 결과

만약,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수요가 자발적으로 증가한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노동수요를 증가시킨 기업이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이 종료된 이후 연도에 노동수요를 줄어들거나 유의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종료된 이후 연도인 2006년도의 고용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2004년도와 2005년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는 있는 것이다. <표 7>의 결과를 보면, *YearDummy*의 계수 값(t 값)은 각각 $-0.68(-0.72)$, $-2.23(-1.18)$ 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지만,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적용이 만료된 이후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도와 2005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표 7> 추가분석 결과

$L_{i,t}^d = \delta_0 + \delta_1 YearDummy + \delta_2 Sales_{i,t} + \delta_3 PPE_{i,t} + \delta_4 LEV_{i,t} + \delta_5 OCF_{i,t} + \delta_6 GDP_t + \epsilon_{i,t}$		
	전체 표본 대상	
<i>intercept</i>	$-921.78(-85.99)^{***}$	$-929.44(-69.06)^{***}$
<i>YearDummy</i>	$-0.68(-0.72)$	$-2.23(-1.18)$
<i>Sales</i>	$42.24(94.71)^{***}$	$42.25(94.70)^{***}$
<i>PPE</i>	$91.91(35.01)^{***}$	$91.92(35.02)^{***}$
<i>LEV</i>	$-2.52(-17.84)^{***}$	$-2.52(-17.84)^{***}$
<i>OCF</i>	$-9.71(3.26)^{***}$	$-9.72(-3.27)^{***}$
<i>GDP</i>	—	$172.26(0.94)$
ad-R ²	0.3257	0.3257
기업-년	19,584	19,584

주1) L^d : 상시근로자 종업원 수, *TaxCredit* :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인건비, *Sales* : 매출액의 로그 값, *PPE* : 설비투자금액/기초자산총계, *LEV* : 부채비율(부채총계/기초자본총계), *OCF*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당기매출액, *YearDummy*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기이면 0,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이후 기간이면 1인 연도더미변수(즉, 2004년도와 2005년도면 0, 2006년도이면 1), GDP_t : t 시점 OECD에서 공시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증가율

주2) *** :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음

VI. 결 론

각 나라는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세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고용의 증가에 따라 기업주가 느끼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가 불확실하고 어려울 때 고용 증대와 관련된 세제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던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노동수요와 연결하여 검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액과 노동수요 간의 관련성에 관한 검증결과, 인건비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변수나 설비투자 등 자본적 지출도 노동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채비율은 노동수요와 음(-)의 관련성이 있었다.

업종 간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가 다른지를 검증한 결과,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서비스업종이 상대적으로 비서비스업종보다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상장기업과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와 같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된 기간(2004년도~2005년도)과 적용기간이 종료된 다음연도(2006년도)를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추가 검증한 결과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이 끝난 다음연도의 노동수요가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감소하였다. 따라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노동수요 창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조세정책의 수단으로서 그 타당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노동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이나 설비투자의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도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도 2010년도에 시행된 고용증대세액공제효과를 비교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선빈 · 장용성. 2008. “조세 · 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동태적 일반균형분석”. 한국개발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103호)
- 김현숙. 2004.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포럼 2004년 8월호
- 손광락 · 손수석 · 안병철. 2006. “고용증대 조세구조의 모색”. 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27 - 45
- 송일호. 2009. “설비투자가 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 생산성논집 제23권 제3호
- 신현걸. 2000.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춘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113 - 1 - 48. 한국세무학회
- 이철인. 2006.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2권 제3호
- 이태정. 2010. “근로장려세제의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논총
- 전병유 · 남재량 · 신동균 · 최강식 · 이일영 · 조준모. 2005. “한국의 노동수요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 06
- 정기현. 2009.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제9 - 1집 재정포럼. 2010. 한국조세연구원. 2010.4.
- Hoffman, Smith, Willis. 2011. Individual Income Taxes. Ghomson Reuters.
- Harden, J. William · William Hoyt. "Do States Choose Their Mix of Taxes to Minimize Employment Losses?. *National Tax Journal*, Mar 203 ; 56, pp.7 - 26.
- www.HMRC.gov.uk
- www.IRS.gov
- www.REV.gov.on.ca

The Effect of Employment Promotion on Tax Credit

Chung—Jin Shim* · JuneQ Lee**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how employment promotion on tax credit affects the labor demand. Employment promotion on tax credit actually induces the company to save money because the company receives a tax credit.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 resul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promotion on tax credit and labor demand is that employment promotion on tax credit i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labor demand. Labor demand is largely and positively affected by the sales as well as the equipments. But leverage variabl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labor demand.

This study finds that there are different the effect of employment promotion on tax credit between service industries and non—service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of applied tax credit. The effect of employment promotion on tax credit deflated by the wage in service industries is mo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labor demand than that of the non—service industries.

By additional result, the labor demand gap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xt year of closed employment promotion on tax credit and the period of applied employment promotion on tax credit is large. During the next year(2006) of closed tax credit period(2005), the labor demand is in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promotion on tax credit.

Our study suggests that the employment promotion on tax credit has positively impact on labor demand and it will give validity to a way of instruments on the tax policies.

<Key words> employment promotion, labor demand, tax policies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Konkuk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Law and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